

# 옹포중학교 학교생활 규정안

일부개정 2023. 12. 00. (옹포중학교-0000)

## 제1장 총 칙

제3조(적용 근거) 이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조와 「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」 및 「옹포중학교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근거한다.

## 제2장 학생 생활

제20조의 2(물품 소지·사용 금지 및 분리 보관 등)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지·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,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

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.

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·기간·장소·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.

요건	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회차 : 주의 실시</li> <li>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</li> <li>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</li> <li>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</li> </ul>
2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- 흡기, 라이터, 레이저빔 기기 등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분리보관 사유를 알림</li> <li>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</li> </ul>
3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- 술, 담배 등	5일	교무실	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</li> </ul> ※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4	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- 도색잡지 등			

제32조 2(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)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.

②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, 분리기간과 장소,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.

생활지도	요건	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
<b>3호 지도</b>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	1호 또는 2호 지도 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 할 경우	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,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나	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'가'에 따른 지도 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교장실 (부재시 교무실, 수업 종료 시 까지)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,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장실(부재 시 교무실)로 이동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<b>4호 지도</b>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	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장실 (부재시 교무실,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)	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(20분) 보장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나	① 3호 '냐'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교장실 (부재시 교무실, 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
기타	※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무실인 경우 수업이 없는 교직원이 분담하여 실시 할 수 있음				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(2023년 12월 00 일)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,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